

2002년도

학술연구교수지원 신청요강

2002. 4

한국학술진흥재단

차 례

I. 사업목적	-----	1
II. 사업내용	-----	1
1. 사업규모		
2. 지원방향		
3. 지원분야 및 대상		
4. 지원규모 및 기간		
III. 공모 및 신청	-----	2
1. 공모방법		
2. 신청방법		
3. 신청자격		
4.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		
IV. 심사 및 선정	-----	5
1. 심사절차		
2. 심사방법 및 내용		
V. 지원금 지급 및 관리	-----	6
1. 지급방법		
2. 지급시기		
3. 관리방법		
4. 지원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		
5. 연구도중 중지의 경우 연구결과물 제출 책무		
6. 학술연구교수 선정자의 지위		
7. 보고서 제출 및 평가		
VI. 간접연구비 지원	-----	10
VII. 행정사항	-----	10

붙임 : 2002년 연구비 산정 · 집행기준표(A · B유형)

I. 사업목적

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학문후속세대가 대학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여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대학연구소의 활성화를 유도

II. 사업내용

1. 사업규모 : 3,000백만원

2. 지원방향

- 대학의 적극적인 육성의지가 있는 경우 심사시 우대
- 여성 신청자 우대 (선정인원의 20% 내외)
-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한 중점지원
- 연구지원관리 및 사후평가 강화
- 매년 중간평가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

3. 지원분야 및 대상

가. 지원분야 : 전 학문분야

나. 지원대상 :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이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

※ 편람, 사전편찬, 교재개발, 번역, 전람회,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4. 지원규모 및 기간

가. 지원규모 : 1인당 연간 3,000만원

- 2,400만원은 연구활동비(매월 균등지급)로 400만원은 연구비, 200만원은 연구기관지원금(간접비용 등)으로 지원함

☞ 지원은 1개 대학당 3명까지 지원함.

※ 연구비 산정기준은 [붙임] 연구비 산정·집행기준표 참조 연구비 산정·집행 기준표는 A유형과 B유형 중에서 연구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.

나. 지원기간 :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지원하고 매년 평가후 지원여부 결정

Ⅲ. 공모 및 신청

1. 공모방법

- 대학 총(학)장 및 기관장을 통하여 공문발송을 통하여 공고
 - 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f.or.kr>)를 통하여 공고
 - 대학(교)에서 학술연구교수를 공개 선발하여 재단으로 일괄 신청
- ※ 인터넷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요강 및 신청양식 공유 제공

☞ 대학(교)에서 학술연구교수를 해당 연구소별 필요 인원, 일정 등을 재단 온라인 신청일 이전에 공모 신청 받아 우수한 학술연구교수 대상자를 확정 선발(우선순위 부여)한 후 **학술연구교수 활용계획서**(소속기관의 육성 의지 및 연구소의 학술연구교수 활용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)와 **연구계획서**(연구실적 포함) 등을 소속기관에서 일괄 제출

2. 신청방법

가. 신청기간

- 온라인 신청 : 2002. 6. 3. (월) - 6. 7. (금) 18:00 까지
 - 서류 제출 : 2002. 6. 12. (수) 18:00까지 도착
- ※ 연구계획서서상 정해진 위치에 반드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함.

나. 온라인 신청 : 대학(교)에서 추천 후보자를 등록한 후 신청 연구자가 입력

- 온라인 신청과 함께 반드시 학교(기관)에서 재단 홈페이지(www.krf.or.kr)에 접속하여 후보자(3인이내)를 추천 순위와 함께 등록 완료하여야 함
 - 추천 후보자로 등록완료 된 신청 연구자가 재단 홈페이지(www.krf.or.kr)에 접속하여 신청함
- ※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입력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할 예정임.

☞ 신청자는 **온라인 신청전** 재단 홈페이지 **【학술연구자정보】** 코너를 통해 본인의 정보(업적 포함)를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하고 이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

☞ 연구업적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은 재단의 학술연구자 정보DB(학술연구자 등록)를 활용함

나. 제출서류

- 1) 총(학)장 추천서 (재단 소정양식) : 추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함
- 2) 박사학위 취득 학위기 1부
- 3) 학술연구교수 활용계획서 7부 (재단 소정양식)
- 4) 연구계획서 7부 (재단 소정양식)
- 5) 박사학위 논문 요약문 7부 (A4용지 3매이내)
- 6) 대표논문

-연구업적 :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중 대표논문 5편의 표지, 목차
연구업적서지사항 각 7부 (각각의 연구계획서 각 뒷면에 첨부)

3. 신청자격

-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이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(한국정신문화연구원 포함)의 부설연구소 소속전임 연구교수로 소속대학 총(학)장이 1년단위 계약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. 단, 현재 취업 중인 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퇴직하여야 함. (별도 증빙 제출)
-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

- ◇ 1997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출간된 전문학술 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) 등의 연구업적이 5편 이상인 연구자로서,

 - **인문·사회계열(예술·체육계열 포함)**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등재후보) 학술지,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, B급 학술지, 또는 A&HCI 및 S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(단, 단독 저서 및 역서 1편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음)
 - 연구업적 산정시 단독저서 및 역서는 논문 2편으로 인정
(단, 공동저서 및 역서는 논문 1편으로 인정)
 - **자연계열**은 SCI급(SCI 및 SCIE 등)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(등록 완료된 외국 특허 포함)이 3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(※ SCI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가 곤란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연구계획서 제출시 동봉하여야 함)
 - ※ 대학 및 연구소(기관포함)에서 발행된 학술지 중 재단 등재(등재후보)학술지,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, B급에 포함되지 아니한 학술지는 전국규모 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음
 - ※ 단 특수한 분야에 있어 등재(후보), A, B급 학술지 【인문·사회계열】 또는 SCI급 【자연계열】 학술지 등에 게재가 어려운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연구계획서 제출시 동봉하여야 함.

4.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

가. 연구비 신청 제한

- 학사학위 취득대학에는 신청할 수 없음
- 기초학문 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에 신청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
- BK21 사업 박사후연수과정자(계약교수 포함)는 신청할 수 없음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(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비 포함)를 지원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-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신청마감일(온라인)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
-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최하위 등급(D급)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(단, 2000년 이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)

나. 연구 참여 제한

- 본 학술연구교수 사업내에서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,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단,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2.12.31 이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며,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

IV. 심사 및 선정

1. 심사절차

단 계 별	심 사 내 용	
1 단계	요건심사	신청자격 여부 등
2 단계	전공심사	-연구업적의 우수성 -대학의 연구인력 활용계획 -연구계획서
3 단계	종합심의	예산배정 및 지원자 선정

2. 심사방법 및 내용

가. 1단계 심사 : 요건심사

- 심사주관 : 재단
- 심사방법 :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저촉 여부 검토

나. 2단계 심사 : 전공심사

- 심사주관 : 전공심사단
- ☞ 재단의 위원회와 심사자 Pool을 중심으로 세부 분야별 패널팀을 구성하며, 필요시 외부 전문가 충원(심사자에게 공정한 심사의 책무 등을 서약받아 심사자의 책임성 고취)
- 심사방법 : 신청과제에 대한 패널심사
- 심사내용(항목)

【적격심사】

심 사 항 목	적격	부적격	지적내용
연구업적이 신청요강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			

【기관의 연구인력활용계획서 심사】

심 사 구 분	심 사 항 목
I. 대학의 육성인지	1. 연구교수 경력에 대한 전임교원 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추천 순위 등
II. 지원의 필요성	2. 학술연구교수의 지원의 필요성

【연구자의 연구계획서 심사】

심사구분	심사항목
I. 연구능력 평가 (대표논문 중심)	1. 연구업적의 수준
	2. 대표업적의 수준
II. 연구목적 평가	3.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주제의 창의성
	4. 대표논문 연구와의 연계성
III. 연구내용 평가	5.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적합성
	6. 연구방법의 논리성 및 구체성
	7. 참고문헌의 적정성
IV. 결과활용 평가	8. 연구결과의 학문적 · 사회적 기여도
	9. 연구결과의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

다. 3단계 심사 : 종합심의

- 심의주관 :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
- 심의방법 : 예산 배분 및 지원과제 선정
- 선정원칙 : 2단계 전공심사 결과에 의해 각 분야별 우선순위 및 예산배정액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

V. 지원금 지급 및 관리

1. 지급방법

연구비는 해당대학으로 일괄 송금하여 대학이 해당연구자에게 월별 관리지침에 의거 지급함

2. 지급시기

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
시기	지원과제 확정후 전액지급, 3개월이내 현장실사후 지원금 계속 집행여부 결정	중간보고서 평가후	중간보고서 및 출판된 논문 평가후
금액	1차년도 연구지원금	2차년도 연구지원금	3차년도 연구지원금

3. 관리방법

- 연구지원금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비관리 주관부서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함

4. 지원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

-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
-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-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
- 연구 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
-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(연구계획서 포함)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
- 연구 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
-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(표절 등)로 하였을 때

5. 연구도중 중지의 경우 연구결과물 제출 책무

- 연구기간이 1년이상 2년이하의 경우 : 학술지 게재논문 1편
- 2년이상 3년이하의 경우 : 학술지 게재논문 2편을 제출하여야 함
- 단, 3개월 미만 중단자는 연구결과물의 제출의무가 없으나,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잔여를 환수조치함

6. 학술연구교수 선정자의 지위

가. 지위

- 본 지원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자를 학술연구교수(MOHRE-KRF Research Professor)라 한다
- 대학은 연구교수의 사무실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, 3년간 지원을 원칙(연단위로 계약)으로 대학부설연구소 전임 연구교수로 채용한다.
- 연구기관은 연구교수에게 도서관, 전산실, 실험실 이용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

나. 역할 및 활용

- 학술연구교수는 연구를 위주로 하되 강좌 개설에 관한 것은 소속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라 활용 가능함

7. 보고서 제출 및 평가

가. 중간보고서

(1) 제출시기

- 1차 : 1년차 연구개시후 10개월 이내 (재단 소정양식)

- 2차 : 2년차 연구개시후 10개월 이내 (재단 소정양식)

* 2년차 중간보고서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1편을 제출하여야 함.

(전문학술지는 아래 다. 최종 연구결과물 발표의 학술지 기준표를 적용)

**** 학술지 게재논문 미제출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며 지원중단시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**

(2) 중간보고서 평가

- 평가주관 : 당초 심사자 및 재단의 위원회(심사자 POOL포함)로 구성된 패널심사단

- 평가대상 : 1차 및 2차 연구과제

- 평가내용 : 당초 연구계획에 의한 연구진행여부 확인 및 차년도 연구계획의 수행 가능성 평가 (후속연구비의 지급타당성 평가)

나. 결과 보고서

(1) 제출시기 :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

(2) 제출자료

- 연구결과보고서 7부 (재단의 소정양식)

- 연수결과 개요보고서 1부 (연구비는 반드시 정산서류 첨부)

- 연구결과요약문 1부

- 논문초록 1부

※ 위의 자료는 한글 또는 MS워드 작성하여 e-mail(추후 관리지침 참조)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함

-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별도의 연구요약문을 작성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.

(3)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

-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'연구결과보고서'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연구비 환수 및 향후 5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(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포함) 신청을 제한함

※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(표절행위 등)로 제출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

다. 최종연구결과물 발표

(1) 연구결과물 발표에 대한 의무

-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3편(중간보고 결과물 1편 포함)이상(저서, 특허포함) 게재하여야 하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

◇ 최종연구결과물은 아래와 같은 학술지(저서)에 게재(출판)되어야 함		
사업/계열	인문사회계열	자연계열
<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>	-학술진흥재단 학술지등재(후보)학술지 -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, B급 학술지 -국제적 수준(A&HCI, SSCI급) 학술지 -전문학술저서	-학술진흥재단 학술지등재(후보)학술지 -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, B급 학술지 -국제적 수준(SCI&SCIE급) 학술지

(2) 연구결과물 제출시기

-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

※ 연구개시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치 아니함

(3) 연구결과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

- 국문표기 : “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. (KRF-2002-050-○○○○○○○)”
- 영문표기 : “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. (KRF-2002-050-○○○○○○○)”

※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음.

(4) 최종연구결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

- 당초 연구결과물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결과 일정수준이하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 (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포함)지원을 일정기간 제한함

라. 연구결과 사후 관리

-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
 -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(Full-text service) 실시
 - 연구현황, 통계 등의 제공

- 연구성파로 발생한 제권리(저작권, 특허권, 실용신안권 등)는 국가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(특허법 제29조)

VI. 간접연구비 지원

지원대상 사업이 아님

VII. 행정사항

- 온라인 신청시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 홈페이지 『연구분야분류표』를 참고하여 분야명을 정확하게 선택하기 바람
-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
이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

문 의 처

(137-17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엽곡동 304번지

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기반조성 1팀

TEL (02)3460-5623~5, 5637 FAX (02)3460-5620

2002년도

학술연구교수(MOHRE-KRF

ResearchProfessor)

지원 신청양식

■ 온라인 신청시

- 1) 온라인 개시와 함께 기관(대학포함)에서는 학술연구교수 추천 후보자를 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f.or.kr>)를 통하여 반드시 등록한 후 연구자가 접속하여 세부 신청기재 사항을 기재할 것
- 2) 각 대학교 비밀번호는 연구비 중앙관리 비밀번호와 일치함

■ 제출서류

- 1) 총(학)장 추천서(재단 소정양식) : 추천 우선 순위를 반드시 부여하여 추천 함
- 2) 박사학위취득 학위기 1부 (2002년도 8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박사학위 취득 예정증명서)
- 3) 학술연구교수 활용계획서 7부 (재단 소정양식)
- 4) 연구계획서 7부 (재단 소정양식)
- 5)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7부 (A4용지 3매 이내)
- 6) 대표논문 5편 7부(최근 5년간 대표적인 연구논문)

-연구업적 :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에 대하여는 동 연구업적이 게재 (출판)된 학술지(저·역서) 5편의 표지, 목차, 연구업적요약문 각 7부(각각의 연구계획서에 첨부)

※ 상기 제출서류는 반드시 위의 순서대로 상철하여 원본 1부를 제출하고,
3)번항부터서 7)번항까지는 각각 합본(제본이 아님)하여 6부를 제출

■ 제출서류

※ 학술연구교수 후보 등록 기관의 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연구현황을 재단DB에 최신자료로 수정하거나 입력하여야 합니다. 동 연구소 자료도 심사시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※접수번호	On-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.	※과제번호	기재하지 마십시오.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

(사업명 : 학술연구교수)

연수과제명	국 문)										
	영 문)										
학문분야	학 문 분야명										
	심사회망 학문분야						심사회망 연구분야 분류코드		※필히기재요망		
신 청 자 인적사항	성 명		(인)				주민등록 번호				
	학위 취득 대학명(국가)		()				학위취득 년 월		년 월 일		
	국내연락처		자택				TEL				
							HP				
			사무실				TEL				
							FAX				
							E-mail				
			친권자	소속			TEL				
				관계			HP				
동료	소속			직위							
	관계			성명							
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		기관명 : 직 위 : 성명 :									
연구기관		연구기관명 : 대학 : 연구소 : 연구소장명 : 직위 : (전화:) (FAX:)									

※ 학문분야의 심사희망학문분야와 학문코드는 재단 홈페이지 (www.krf.or.kr) 첫 화면의 “연구분야분류표”상 세부분야명과 학문코드를 참조하여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<양식 2>

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교수 총(학)장 추천서

신 청 자	국문)	주민등록번호	-
	영문)		
연 구 과 제 명			
연구소장	직 위		성 명
추천의견 :			

상기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연구자로서 귀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의 신청자 (명)중 (순위)로 추천하며, 연구자가 연구를 종료할 때까지 소속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.

2002. . .

대학명 :

기관장 : (직인)

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

2002년도 학술연구교수 활용계획서

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운영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.

2002. . . .

대학명 :

기관장(직인)

1. 연구교수제 운영의 필요성

가. 학술연구교수의 인력 필요성 등

- 강의활용부분 및 연구소 연구와 연대한 유기적인 활용방안 등

- 학술연구교수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소속기관의 필요성 등

2. 운영계획 (2002년 ~ 2005년)

가. 연구 (연구계획서에 의한 일반연구를 말함)

나. 특정프로젝트 참여 (연구주제 제시 및 개요설명)

다. 기타 운영방안

※ 각 항목은 연도별 세부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3. 학술연구교수 처우계획

가. 일반 전임교수와 동일한 조건으로서의 처우 계획

나. 동 학술연구교수의 임용 및 처우에 대한 규정정비 계획

다. 학술연구교수 복무규율

※ 여기의 “처우”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보수이외에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사항을 말합니다.

4. 2005년 이후 자체 재원에 의한 채용 및 운영계획

※ 대학에서 학술연구교수제 정착을 위한 장단기 계획(학술연구교수 운용을 통한 연구소 육성방안, 학술연구교수 임용을 위한 자체 재원 충당방안 등을 포함)을 기술하십시오.

<양식 4>

※접 수 번 호	On-line 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.
----------	--

※과 제 번 호	기재하지 마십시오.
----------	------------

연구 계획서

연수과제명	국문	
	영문	

※ 아래의 각 항목별로 2~4매씩 총 10매~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하되 3년간 계획의 기술이 필요한 항목은 년차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1.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

(연구주제의 독창성, 연구업적과 계획의 체계적 연계성)

2. 연구의 내용, 방법, 범위

(연구의 설계, 내용, 방법 등의 창의성, 논리성 및 구체성 등)

3. 연구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 (연구배경)

(연구논문의 학문적·사회적 기여도, 학위논문의 활용과 파급효과의 정도 및 교육에의 활용정도 등)

4.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

5. 참고문헌

<양식 5>

※ 접수번호	On-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 십시오.
--------	--

※ 과제번호	.
--------	---

연구업적서지사항

(2002년도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)

업적 형태 구분	저서() 역서() 학술지() 외국특허()
논문(저·역서, 특허) 제목	
학술지 구분	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(), 교육부 학술지등급부여A/B등급() A&HCI 또는 SSCI급(), SCI급(), 기타()
학술지(저·역서/특허)명	
발행연도(권/호 포함)	
발행(출판)기관	
SCI Impact Factor	(※ 자연계열만 기재, 최근 발표된 JCR 기준)
연구업적 참여자수	1명() 2명() 3명() 4명() 5명이상()
역할구분	연구책임자 () 공동연구자()
【 내 용 요 약 】 ※ 연구업적 1편당 1쪽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하여야 함 ※ 연구참여자는 본 요약문을 On-line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5편에 대하여 각 7부를 작성하여 연구계획서 맨 뒷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※ 선택업적의 표지와 목차 사본(신청자 또는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삭제)은 본 요약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	

■ 2002년 연구비 산정·집행기준표(A 유형)

항 목	내 용	산정·집행기준
① 인건비	• 연구참여 수당 -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석·박사과정생, 학부생	-학부생 : 연 240만원 이내/1인당(월 20만원) -석사과정생 : 연 360만원 이내/1인당(월 30만원) -박사과정생 : 연 480만원 이내/1인당(월 40만원)
② 연구 활동 경비	•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	-인정안함
	•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, 세미나 개최, 국내외 정보D/B 네트워크(DNS)사용료, 해외기술정보 수집비, 평가회의비 등	-실제 소요액
	•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, 현지교통비,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	-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,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, 인원,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-국외여비는 학술회의 참가,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(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)
	• 유인물비(인쇄비, 수용비)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 인쇄, OHP 복사, 슬라이드 제작, 사진 현상,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	-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
	•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우편,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보험금, 각종 수수료 등	
③ 직접성 경비	• 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	-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
	• 문헌구입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(도서, 출판물 등)	-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
	• 장비사용료(임차료)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(장비,기기)의 사용료, 분석료,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(컴퓨터 사용료)	-대내·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
	•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(전산장비, S/W포함)와 부수기자재(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)	-품목,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-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-실제 소요액
	•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(특허출원비)	-연구결과의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(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에 2한함)

■ 2002년 연구비 산정 · 집행기준표(B 유형)

항 목	내 용	산정 · 집행기준
① 인건비	· 연구참여 수당 -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석·박사과정생, 학부생	-학부생 : 연 240만원 이내/1인당(월 20만원) -석사과정생 : 연 360만원 이내/1인당(월 30만원) -박사과정생 : 연 480만원 이내/1인당(월 40만원)
② 연구 활동 경비	· 연구활동비 -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	-인정안함
	· 연구회의비 -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, 세미나 개최, 국내외 정보D/B 네트워크(DNS)사용료, 해외기술정보 수집비, 평가회의비 등	-실제 소요액
	· 여비 -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, 현지교통비,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	-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,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, 인원,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-국외여비는 학술회의 참가,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(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)
	· 유인물비(인쇄비, 수용비) -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 인쇄, OHP 복사, 슬라이드 제작, 사진 현상,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	-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
	· 공공요금 등 잡비 -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우편,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보험금, 각종 수수료 등	
③ 직접성 경비	· 문헌 및 재료구입 -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(도서, 출판물 등) 및 내구년수 2년 이하인 시약, 기구, 소모성재료,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	-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-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
	· 장비사용료(임차료) -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(장비,기기)의 사용료, 분석료,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(컴퓨터 사용료)	-대내·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
	·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(전산장비, S/W포함)와 부수기자재(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)	-품목,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-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-실제 소요액
	·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(특허출원비)	-연구결과의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(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에 한함)